

충청북도 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·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 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(대통령령 제13451호, 91. 8. 16)시행
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화위원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증 “각교육장”을 “하급교육청교육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중 “학무국장이”를 “중등교육국장이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증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증 “갑류”를 삭제한다.

③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증 “을류”를 삭제한다.

④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증 “학무국장”을 “부교육감”으로, “사회체육과장”을
“중등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3항중 “학무국 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과학기술과장, 관리국 관리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부녀청소년과장”을 “초등교육국장, 관리국장, 사회교육체육과장, 초등장학과장, 과학기술과장, 행정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, 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중 “사회체육과”를 “사회교육체육과”로 한다.

⑤ 단재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부교육감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5항 제1호중 “학무국장, 관리국장”을 “본청 국장급이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 제1항중 “10월중에 교육감이”를 “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”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5항 제2호 중 “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관리과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)이 되며 위원은 각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각과장 및 각계장)이 된다”로 한다.

동조 동항 제3호중 “간사는 관리와 경리계장이 되고”를 “간사는 관리과경리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)이 되고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조 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 감이 된다. ② 위원은 <u>학무국장, 관리국장, 기획감</u> <u>사담당관 및 각과장으로 한다.</u>	제2조 ① ② 위원은 <u>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</u> <u>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</u>
제3조 ~ 제6조(생략)	제3조 ~ 제6조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

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략)

부칙 제2조에 의거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조례의 내용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제명 : 충청북도학교환경위행정화 위원회설치조례</u></p> <p>제2조(설치) 각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 ② 도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학무국장</u>이 되며</p>	<p>제2조 (설치) 하급교육청 교육장</p> <p>제3조(구성) ① ② 부위원장은 <u>중등교육국장</u></p>
<p><u>제명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 심사위원회위원회비용변상조례</u></p> <p>제3조(여비)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할때에는 <u>국내여비규정(별표 1)</u>의 제2호갑류 해당자의 여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여비)국내여비규정(별표1)의 제2호 해당자의</p>
<p><u>제명 :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</u></p> <p>제16조(수당과 여비)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은 <u>국내여비규정 별표2</u></p> <p><u>여비정액표의 제2호 을류 해당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6조(수당과 여비)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의 제2호 해당자</p>

현 행	개 정 (안)
<u>제명 :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 설치조례</u>	
제2조(조직) ② 협의회 위원장은 <u>학무국장</u> 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사회체육과장</u> 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가 된다. ③ 협의회장은 <u>학무국 초등교육과장</u> , <u>중등교육과장</u> , 과학기술과장, 관리국관 리과장,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 과장, 부녀청소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 로 하고.....	제2조(조직) ① <u>부교육감</u> <u>중등교육국장</u> ③ <u>초등교육국장, 관리국장</u> , 사회교육체육과장, 초등장학과장, 중등 장학과장, 과학기술과장, 행정과장, 중 앙도서관장 및 <u>충청북도사회과장</u> , 청소 년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
<u>제명 : 단재교육상조례</u>	
제5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 육상 수상대상자 추천마감후 15인이내 로 위촉하며, <u>학무국장</u> 은 당연직위원이 되고	제5조 ① <u>부교육감</u>
제8조(추천 및 심사) ①-④항 생략 ⑤ 교육상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 천권자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. 1. 교원 및 일반부문 : 교육장, 고등학 교장, <u>학무국장, 관리국장</u>	제8조(추천 및 심사) ①-④항 : 현행파 같음 ⑤ 1. 교원 및 일반부문 : 교육장, 고등학 교장 <u>본청 국장급이상</u>
제10조(시상) ① 교육상은 매년 1회 10 월중에 교육감이 시상하며.....	제10조(시상) ①매년1회 <u>교육</u> 감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.....

현 행	개 정 (안)
<p><u>제명 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</u></p> <p><u>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</u></p> <p>제7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-④항 생략</p> <p>⑤ 교육청에는 1. 2.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<u>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계장이 된다.</u> 3.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<u>관리과 경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</u></p>	<p>제7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-④항(현행과 같음) ⑤ 교육청에는 1. 2. <u>부위원장은 관리과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)이 되며 위원은 각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각과장 및 각계장)이 된다.</u> 3. <u>관리과 경리계장(단,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)이</u> </p>